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심사 보고

2000. 9. 30  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-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9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재식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(법률 제16928호, 2000. 7. 29)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
- 기타 도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사항 정비(안 제9조)  
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 의결 및

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 
 ⇒ 과세표준관련사항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로 정비

○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(안 제9조의 2)

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등에  
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 
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

-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로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-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 
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
-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 
 에는 서면으로 심의
-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 정하도록 함

○ 군납업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대상 삭제(제45조)

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  
 매 1건당 11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 
 동 법률이 폐지(법률5598호, 1998.12.28 공포, 1999.3.1 시행)  
 됨에 따라

○ 지방세법에서도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도세조례를  
 법과 일치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)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○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

-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심의·의결도록 하고
-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별도로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려는 것이며
- “군납에 관한 법률”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군납업자로 부터 징수하던 등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

○ 동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### 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: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심사청구의 심의·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”를 “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기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4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안
<p>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 <u>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</u>  <u>구의 심의·의결 및 과세표준의</u>  <u>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</u>  <u>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</u>  <u>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~⑥ (생략)</p>	<p>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 -----  <u>심사청</u>  <u>구를 심의·의결하기</u>  -----.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	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의2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 <u>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</u>  <u>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과세</u>  <u>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</u>  <u>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 <u>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</u>  <u>구성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  <u>한다.</u></p> <p>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 <u>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</u>  <u>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</u>  <u>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군납업등록의 세율) 군납에  <u>관한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</u>  <u>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</u>  <u>115,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</u>  <u>한다.</u></p>	<p>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    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    &lt;삭 제&gt;</p>

**참 고 자 료**

- 지방세법 (부분발췌)
- 지방세법시행령 (부분발췌)
-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

## 관련법규 부문발췌

### ○ 지방세법

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·과세객체·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### ○ 지방세법시행령 (2000. 7. 29 공포 : 대통령령 제16,928호)

제81조의2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○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

— 1998. 12. 28, 법률 제5598호 —

법률 제3550호 군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납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납조합(이하 “군납조합”이라 한다)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.

②종전의 군납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군납조합의 재산 및 권리·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세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(군납업 등록의 세율)를 삭제한다.